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601

발의연월일: 2020. 11. 20.

발 의 자:최기상・박상혁・이장섭

정일영 · 이형석 · 우원식

고용진 · 임호선 · 기동민

한병도 · 서동용 · 이학영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전자송달 시 송달받을 자가 전자문서 등재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확인하지 않은 경우 '등재 사실을 통 지한 날'부터 2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30일이 지날 때까지 지정재판부의 각하결정이 없는 때에는 심판회부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런데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기간은 30일밖에 되지 않는 반면 송달 간주기간은 2주로 길어서, 미비한 적법요건을 보완하라는 전자적 보정명령을 사전심사기간 이내에 확인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심판청구가 심판회부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한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제도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실무상 사전심사기간 내 전자적 보정명령 통지 를 확인하였는지 파악하기 위해 유선 재통보, 우편 추가 발송 등 행정 력 낭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비교하여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송달받을 자가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가사·행정·특허소송 등에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의 전자적 송달 간주기간을 민사소송 등과 같이 2주에서 1주로 단축함으로써 심판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운영하려는 것입니다(안 제78조제4항). 법률 제 호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4항 단서 중 "2주"를 각각 "1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청구서가 접수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8조(전자적 송달 등) ① ~ ③	제78조(전자적 송달 등) ① ~ ③
(생 략)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의 경우 송달받을 자가	4
등재된 전자문서를 헌법재판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	
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등재 사실을 통지한 날	
부터 <u>2주</u>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	<u>1주</u>
하였을 때에는 등재 사실을 통	
지한 날부터 <u>2주</u> 가 지난 날에	<u>1주</u>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